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4. . .	
연월일	(제 회)	

물 의 재 이 용 촉 진 및 지 원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(법률 제 20115호, 2024. 7. 24. 시행)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정하고,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,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 등 정비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4조제2항)

- 1)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
- 2) 관할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관리계획 수립권자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, 조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

나. 중수도의 설치 대상·관리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1조제2항)

법률 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규정한 인용 조문의 변경

다.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·승인 등 정비(안 제13조제3항)

환경부장관이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

라.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 삭제(안 제15조)

의견제출 기간(“30일 이내”)이 법령으로 상항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
마.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
(안 제17조제2호)

바.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·시공업의 등록권자 정비(안 제18조 제1항 및 제2항)
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·시공업의 등록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,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정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

사. 권한의 위임 중 제외가 되는 대상 정비(안 제19조제2항제1호)

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 중 제외가 되는 승인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,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

아.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(안 별표 2 제2호)

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및 일부 위반행위의 내용을 변경하고, 근거 법조문 일부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”로,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도에”를 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의”를 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”로, “도지사 간”을 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간”으로, “시장·군수”를 “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과 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과 시장”으로, “특별시장·광

역시장과 시 또는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과 시 또는”으로, “도지사 간”을 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간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및 제4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각각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제1항제7호”를 “법 제9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2호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1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다목 중 “법 제8조제1항”을 “법 제8조제2항”으로, “설치 결과”를 “빗물 처리용량 등을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 중 “법 제8조제2항”을 “법 제8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

호 마목 중 “법 제8조제4항”을 “법 제8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바목 중 “법 제8조제4항”을 “법 제8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사목 중 “법 제9조제1항”을 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아목 중 “법 제9조제1항”을 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3항제4호”를 “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자목 중 “법 제9조제1항”을 “법 제9조제3항”으로, “설치 결과”를 “중수 처리용량 등을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차목 중 “법 제9조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카목 중 “법 제9조제6항”을 “법 제9조제9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타목 중 “법 제9조제7항”을 “법 제9조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파목 중 “법 제9조제8항”을 “법 제9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) ① (생 략)	제2조(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및 시장 · 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(이하 “물 재이용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제주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</u> 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</u>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	②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</u>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</u> ----- 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) ① (생 략)	제4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	② -----

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: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

2.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: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
3.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
특별시장 · 광역시장과 시장
또는 군수인 경우: 특별시장 ·
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

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
결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
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
4.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
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: 환
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
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
시장·군수

제11조(중수도의 설치 대상·관
리) ① (생 략)

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
모 이상의 시설물”이란 연면적
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
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
1. ~ 7. (생 략)

제13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·
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
인 등) ①·② (생 략)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
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
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

또는 -----
-----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
지사 간----- 특별시장·광역
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
·특별자치도지사 ----

4. -----

----- 특별시
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-

제11조(중수도의 설치 대상·관
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9조제1항제3호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·
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
인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삭 제

⑤ (생략)

제15조(의견제출 기간)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질검사) 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----- 특별시장·광역시·도지사 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7조(수질검사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
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

3. (생략)

제18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
설등 설계·시공업의 등록 등)

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
설계·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
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
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
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
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
설계·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
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
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③·④ (생략)

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
·도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
설등 설계·시공업의 등록 등)

① -----

----- 특별자치시장·제주특
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
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
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
구청장등”이라 한다)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시장·군수·구청장등-----

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 략)	제19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 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 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 경승인(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</u> 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· 변경승인은 제외한다)	1.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제주특별자치 도지사</u> ----- -----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생활하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26